

「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기관에 관한 고시」 제정안

1. 제정이유

- 「혈액관리법」 개정(2020. 12. 4. 시행) 으로 병상수 및 혈액사용량에 따라 의료기관이 수혈관리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, 이에 따라 제정된 시행규칙에서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에 연 8시간 이상의 교육 의무를 두고, 동 시행규칙 [별표 5의2]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혈관리 관련 전문 학회·단체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혈액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5의2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없음
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- 146호

「혈액관리법」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규정에 의하여 「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기관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

2021년 4월 28 일

보건복지부장관

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기관에 관한 고시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혈액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의2 및 「혈액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5의2에 따라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혈관리 관련 전문 학회 및 단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수혈관리실 근무인력 교육 기관

제2조(교육 기관) ‘대한수혈학회’와 ‘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’를 「혈액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별표5의2 3. “교육 기관” 중 라목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.

제3조(보고) 제2조의 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이름 등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 (재검토 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

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